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05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정희용・김재섭・박준태

김선교 · 조지연 · 이만희

조은희 · 김소희 · 김성원

권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하여 2배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벌금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,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(헌법재판소 2024. 7. 18. 선고 2022헌가6 결정).

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

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9조(벌칙) ① 「상법」 제401	제39조(벌칙) ①		
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			
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			
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			
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			
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			
작성·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			
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			
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			
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			
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			
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			
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			
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			
벌금에 처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</u>		
	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		
	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		
	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		
	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		
	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		
	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		
	원으로 한다.	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	